

남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

의안 번호	704
----------	-----

발의연월일 : 2022년 4월 25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르면 우리시의회 의원 정수가 당초보다 증원(18명→21명)될 계획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전문위원의 직급 변경

당초안: 지방행정사무관(5급상당 별정직공무원 포함) 2인과 지방행정주사 2인

수정안: 지방행정사무관(5급상당 별정직공무원 포함) 3인과 지방행정주사 1인

남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

남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 중“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2인과 지방행정주사 2인”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3인과 지방행정주사 1인”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5조(전문위원) ① <u>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2인과 지방행정주사 2인으로 보한다.</u> ② (생략)	제5조(전문위원) ① ----- <u>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3인과 지방행정주사 1인</u> -----. ② (원안과 같음)